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 이스포츠 진흥 지원 범위 확대 〉

■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01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 이스포츠 진흥 지원 범위 확대	2
※ 참고자료	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연욱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6. 26.

다. 회 부 일 : 2025.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Ⅲ. 검토의견

1. 이스포츠 진흥 지원 범위 확대(안 제5조)

가. 개정안 요지

-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과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u>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u>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 ----- -----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 -----.
<u><신 설></u>	<u>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u>
<u><신 설></u>	<u>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u>
<u><신 설></u>	<u>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u>
<u><신 설></u>	<u>4. 이스포츠 대회 개최</u>
<u><신 설></u>	<u>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u>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과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 이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재 양성 선순환 구조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팀 창단과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며,¹⁾ 이스포츠 관련 학교 및 청소년 교육을

확대할 경우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이스포츠 은퇴 선수가 코치나 지도자로서 제2의 진로를 개척할 기회를 제공하고²⁾ 은퇴 선수들의 경험을 청소년 교육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 개정안에 대하여 전부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6

-
- 1)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부터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총 3개 종목, 14개 지역)’가 출범하였고 리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역 연고팀의 활발한 창단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임.
- 2) 2024 이스포츠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스포츠 프로선수 설문 결과, 불투명한 향후 진로를 38.4%(1위)로 꼽음.

참고1**관련 사업 추진 현황****○ 학교 이스포츠클럽 지원(국비)**

구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5년	800	(사)한국 이스포츠협회	교내 이스포츠 진로체험 활동 / 학교 클럽지원활동 사업 등('25년~)

○ 이스포츠 지역 리그 팀 창단·운영 지원(국비)

구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5년	800	(사)한국 이스포츠협회	2025년부터 신설된 이스포츠 지역리그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 프로 팀 외 지역 기반 팀 창단·운영 지원('25년~)

○ 지방자치단체 의견

지자체명	의견 주요내용				
경기도 포천시	• (의견) <제5조 제6호 신설> 6. 이스포츠팀 육성과 운영을 위한 지역연고 구단의 창설 및 유지 - (사유) 이스포츠 팀은 운영 능력을 지닌 지역 연고 구단이 표준화된 육성 방안에 의해 운영해야 이스포츠팀 활성화가 가능				
전북특별 자치도	• (의견) 지역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지자체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판단됨 <table border="1"> <thead> <tr> <th>개 정 안</th><th>수 정 안</th></tr> </thead> <tbody> <tr> <td>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 대회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td><td>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교육감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 대회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td></tr> </tbody> </table>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 대회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교육감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 대회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 대회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교육감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 대회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